

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60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2009.2월부터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, 2019.06.30.자로 5번째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
- 나. 금년 1.22.일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, '18년 건전정보문화조성부문 대통령포창 수상, 병원·학교 등 40여개 기관과 협약으로 지역 내 청소년 교육·상담기관으로서 활발하게 운영한 점을 고려하여,
- 다. 2년간 운영기간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2021.06.30.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
○ 재계약 사유

-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청소년의 인터넷·스마트폰 중독 관련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립 시설로,
- 지난 3년간 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는,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법인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사업과 대안학교 운영,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이동쉼터 운영 등 청소년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임
- 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법인 산하 여의도 성모병원, 서울성모병원과의 MOU체결을 통해 전문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인터넷중독 연구 및 도구개발, 인터넷·스마트폰중독 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음
- 청소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대안활동(BUS) 운영,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
- 청소년 인터넷중독과 상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동 법인에게 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2년간 재계약 운영토록 하고자 함

○ 3년간 주요 추진실적 ※ '17년부터 '22년 까지 경전철 공사로 인하여 이용자 감소

사업구분	상담	예방교육	연구·홍보	특별지원사업
2016년	25,957명	89,921명	6,696명	3,219명
2017년	19,871명	57,629명	12,769명	2,972명
2018년	28,583명	67,188명	43,697명	18,645명

- 주요 우수사항

- ▶ 해외 언론·기관 방문 : 일본 아사히신문, 일본 TBS, 일본 4개 대학 사회 복지학과, 싱가포르 중독치료센터 등.
- ▶ 2016년 중독포럼 '균형과 실천'상 수상
- ▶ 2016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결과 '최우수기관' 선정
- ▶ 2017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결과 '최우수기관' 선정
- ▶ 2018년 정보문화유공 건전정보문화조성부문 '대통령표창' 수상
- ▶ 2018년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우수부스상 수상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
- 인터넷중독 상담·치료사업
- 인터넷중독 예방·상담 전문인력 양성사업
-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
- 기타 인터넷중독 예방·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
- 시설규모 : 203㎡
- 주요시설 : 개인·집단 상담실, 교육실, 사무실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-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선지현 (☎2133-4130)